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6)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순 화]

목 차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8
4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	40
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49
6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5
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	74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개정이유

-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 7. 2. 시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
- 나.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율성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내용을 함께 규정(안 제1조)
- 나.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1) 종이형 권면금액, 상품권 기재사항 정함
 - 2)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을 정함
- 다. 판매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1)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서 내용
 - 2)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
- 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1)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공개
 - 2) 가맹점 제한 업종, 가맹점 자격 요건
- 마. 상품권 잔액환급 비율 정함(안 제8조)
- 바.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 정함(안 제9조)
- 사. 상품권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45,000천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8. 28. ~ 9.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모델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판매 대행점 정보 공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제출, 가맹점 등록 및 거부사유, 가맹점의 자격 요건,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사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사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

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2] [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8건

법률위임 조문 및 내용
<p>(제4조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④ 그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6조제1항)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6조제2항)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조제3항) 판매대행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등을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제1항)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7조제2항)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이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p>
<p>(제7조제4항)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제2항)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 현행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 2019.04.03 조례 제24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창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액(券面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
 2. 1만원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한 영업소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가맹점이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할 수 없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3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2. 상품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위조·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가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

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우대한 금액의 환수) 군수는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제정이유

현행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만 한정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을 정함
(안 제7조~제9조)
- 마.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7조)
-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38백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8. 21.~9.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거창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 안 제9조(재정지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폐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8.13 조례 제19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육성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위반한 때 또는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수

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폐지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5 조례 제21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으로써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포함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

합동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협동조합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공동사업,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등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등·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1조(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

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업비 : 25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250	250	250			25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4. 부서의견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이 올해와 같은 200억 원이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동일하게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추후 출연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목표액 확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 타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함.

5.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 붙임
- 경남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 붙임

6. 검토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15.8%, 경남도 28.7%, 시·군 6.3%, 금융기관 45.7%, 기업체 등이 3.5%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8. 7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2명		99명		13명		
임원 (‘20. 8.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18.11.1~’20.10.31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現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9.4.25~	
		김**	現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18.4.24~	
		김**	現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19.6.1~’21.5.31	
		한**	現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19.6.1~’21.5.31	
		김**	現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19.6.1~’21.5.31	
		임**	前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19.6.1~’21.5.31	
	감사	장**	現장** 회계사무소대표			‘18.9.1~’20.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00,07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4,13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248,812 (자산 총액)
	예산액 ²⁾	56,740	71,137	88,155		부채	48,73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4,123	7,550	9,450		자본 ¹⁾	200,07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039			39,626		△ 18,587	

2021년도 『거창군』 출연금 지원 요청

2021년 거창군 출연금 (5억원) 지원 요청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거창군의 출연금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거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일금 5억원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I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경남	246,777	218,894	242,275	98.2	1,103,810	429,684	745,135	67.5
거창	4,176	3,792	4,130	98.9	12,838	7,034	11,466	89.3

* 출처 : 「2019 중소기업현황(2017년 기준)」, 중소기업 중앙회

○ 신용보증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6억원	0.79억원	0.98명

* 출처 : 「201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재단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

- 단기간 보증공급 급증에 따라 경남재단의 운용배수는 전국재단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운용배수 증가추세: ('18년) 6.66배 → ('19년) 7.41배 → ('20.6.30) 10.09배 → ('20년말 추정) 12.09배

** 전국평균 8.8배, 운용배수 : 경북>대구>경남>대전>충남('20.6.30기준)

- '21년 운용배수도 '20년과 동일하게 한계 운용배수(12배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 출연금 확보가 필요

<참고자료>

운용배수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BIS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의 **한계 운용배수는 12배***로 산정되며, **지역신보의 적정 운용배수는 10배 수준**

※ BIS비율 8%[자기자본/대출자산(위험자산)]의 역수 : $100/8 = 12.5 \approx 12$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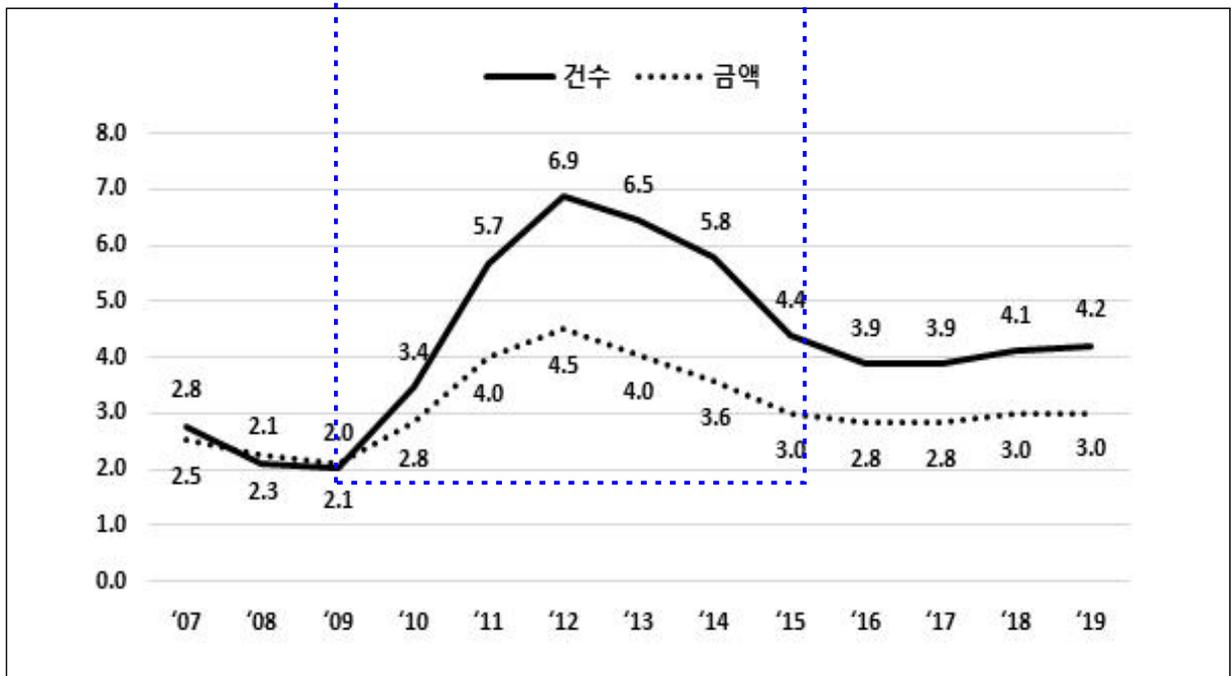
○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 필요

-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등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와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수요 급증으로 지속적인 손실증가 예상

* 손실금 증가: ('18년) △127.5억원 → ('19년) △185.9억원 → ('20년추정) △396억원 → ('21년추정) △485억원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08~'09년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율 증가한 사례를 볼 때 '21년이후 손실 급증 예상

* 대위변제율(전국재단) : ('09년) 2.08% → ('10년) 2.83% → ('11년) 4.0% → ('12년) 4.49%



II 거창군 신용보증·대위변제 주요현황

○ 거창군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누적 총보증 금액은 1,669억원
- '20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증지원 대폭 증가

(‘20.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6년	3,042	636	2	1	3,044	637
2017년	904	189	-	-	904	189
2018년	1,068	212	-	-	1,068	212
2019년	1,239	285	-	-	1,239	285
2020년 6월말	1,132	344	4	2	1,136	346
합 계	7,385	1,666	6	3	7,391	1,669

○ 거창군 대위변제발생 현황

- 거창군 소재 기업의 대위변제 누적 금액은 39억원으로 매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향후 지속적 부실 증가 우려

(‘20.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6년	198	19	1	1	199	20
2017년	35	4	-	-	35	4
2018년	43	6	-	-	43	6
2019년	38	6	-	-	38	6
2020년 6월말	21	3	-	-	21	3
합 계	335	38	1	1	336	39

III 출연금 현황

○ 기초지자체 출연비중 저조

- 우리재단 출연금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신용보증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영위하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은 6.3%로 저조한 실정

(2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출연금					이월 손익금	계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액	419.8	762.9	168.0	1,214.9	94.7	△368.8	2,291.5
구성비	15.8%	28.7%	6.3%	45.7%	3.5%	-	100%

○ 시·군별 출연 현황

(2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합천군	의령군	합계
'20년	11.0	4.0	4.0	3.5	3.5	3.0	2.5	2.0	2.5	2.5	1.5	1.5	1.5	1.5	1.0	1.5	1.5	1.0	49.5
누적	34.0	14.0	13.5	13.5	17.5	10.0	8.5	5.0	8.5	7.5	5.5	5.5	4.5	4.5	4.0	3.5	4.5	4.0	168

* '20 하반기 추가출연금 요청 (거창군 1억5천만원)

○ 전국 광역지자체 출연금 중 시·군 출연비중 하위수준

- 유사한 수준의 타 재단 비교에서도 우리재단의 시군 출연금 비중은 평균(19.7%) 이하의 매우 저조한 수준(6.3%)을 보이고 있음

(20.06.30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경남	2,660	763	28.7%	168	6.3%	1,729	65.0%
강원	1,931	782	40.5%	72	3.7%	1,077	55.8%
경기	13,715	3,428	25.0%	3,838	28.0%	6,449	47.0%
경북	2,685	586	21.8%	722	26.9%	1,377	51.3%
전남	2,084	670	32.1%	143	6.9%	1,271	61.0%
전북	2,115	638	30.2%	272	12.9%	1,205	57.0%
충남	2,478	614	24.8%	338	13.6%	1,526	61.6%
충북	1,665	329	19.8%	239	14.4%	1,097	65.9%
합계	29,333	7,810	26.6%	5,792	19.7%	15,731	53.6%

2021년 거창군 출연 요청금 산정기준

○ 출연금액 산출

- 보증잔액 증감, 대위변제 순증금액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要 출연금을 산정한 후 조정을 통해 최종 출연요청 금액 결정

○ 거창군 출연산정 참조자료

(단위 : 백만원)

지역	보증잔액 증가액			대위변제 순증	출연 필요금액			안분차감		2021년 최종 출연금 산출 (조정적용) ¹⁾ (E)	2021년 출연금 연계 신규보증 지원규모 (예.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²⁾ (E)x12배
	2018년 (A)	2019년 (B)	증감 (C)(B-A)		2019년 (D)	잔액증가 법정비율 (C/15배)	대위변제 (재보증 제외) (Dx50%)	소계	경남도 출연		
합 계	1,340,839	1,484,375	143,737	39,623	9,584	19,732	29,315	8,000	21,313	16,850	202,200
거창군	26,325	32,834	6,509	433	434	217	651	178	473	500	6,000

- 1) 2021년도 최종 출연금 조정적용 : 산출출연금과 시·군별 출연 연계 소상공인 육성자금(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없을 경우 일반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2) 2021년 출연금 연계 신규보증 지원규모 : '21년 재단의 신규보증공급 계획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 적정 규모 산출

【참고사항】

1. 기본적으로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 규모는 법상 15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은행의 BIS비율(8%)을 준용하여 최고 **12배 이내로 운용함이 적정합니다.**
2. 2019년까지 우리재단의 운용배수 여유가 있어 시·군의 이차보전 규모에 대하여 별도 제한 없이 운용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한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3. 향후 보증운용 전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권고***를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출연에 따른 연계 보증공급 규모를 **12배 이내로 축소하여** 운용하게 되오니 시·군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연부 협약보증 운용배수 관련 협조요청」(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0.8.12.)

붙임

시군별 추가 출연금(50억 원) 산출내역

(’20.05.08.기준,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현황(’20.5.8. 기준)						점유율	추가 출연금	당초 출연금
	대출실행(A)		심사진행중(B)		합계(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601	350,051	22,230	454,550	36,831	804,601	100.0%	5,000	5,100
창원시	4,610	116,756	7,405	163,537	120,15	280,293	34.8%	1,700	1,100
진주시	1,609	33,207	1,931	34,123	3,540	67,330	8.4%	400	400
통영시	481	12,007	1,389	31,910	1,870	43,917	5.5%	300	300
사천시	720	14,455	550	10,142	1,270	24,597	3.1%	150	250
김해시	1,773	43,312	3,515	71,113	5,288	114,425	14.2%	700	550
밀양시	564	15,301	529	12,228	1,093	27,529	3.4%	200	200
거제시	1,296	29,817	2,167	37,183	3,463	67,000	8.3%	400	350
양산시	1,068	24,656	2,015	42,531	3,083	67,187	8.4%	400	350
의령군	51	1,098	122	2,910	173	4,008	0.5%	50	100
함안군	228	5,072	788	14,747	1,016	19,819	2.4%	100	250
창녕군	653	17,382	80	2,031	733	19,413	2.4%	100	150
고성군	255	5,404	574	10,988	829	16,392	2.0%	100	150
남해군	252	5,612	339	4,998	591	10,610	1.3%	50	150
하동군	158	3,256	176	2,807	334	6,063	0.8%	50	150
산청군	99	2,177	127	1,871	226	4,048	0.5%	50	150
함양군	99	2,526	114	2,422	213	4,948	0.6%	50	100
거창군	553	14,746	293	6,716	846	21,462	2.7%	150	250
합천군	132	3,267	116	2,293	248	5,560	0.7%	50	150

* 산정기준 :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실적 점유율에 따라 안분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0. 20.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박수자 ·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권재경

이재운 · 김향란 · 표주숙 · 이흥희 · 신재화 · 권순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정이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산림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함(안 제3조)

다.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임업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공유림 관리를 사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산림자원 소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산양삼 재배자 교육,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체험행사·전국대회 행사 참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음.

-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꺼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자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림 경영·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써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제안이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1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1년	18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관계 법령 : 붙임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8년도부터는 1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 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채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0.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20.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감사	최○○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323 (자산 총액)
	예산액 ²⁾	487	655	735		부채	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180	180		자본 ¹⁾	31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74			250		124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참고자료(거창화강석연구센터 현황)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5명(센터장 1, 연구직 2, 생산직 2)

성명	직책	담당업무	학위/자격
김건기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술지원	박사/가'
강무환	선임연구원	시험분석 품질업무 / 법인 운영 / 채석기술관련	석사/나'
정영일	선임연구원	시험분석 기술업무 / 사업 관리 / 가공기술개발	석사/나'
조형철	생산/시험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이진호	생산/시험담당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라'

II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석재산업 현황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 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24	6	18
종사자수	253	129	101
매출액 (2019년)	65,366	31,684	33,682
농업조수익 (2019년)	쌀(55,263), 사과(126,072), 딸기(40,082), 한우(121,006)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거창지역 매출액이 증가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국	338,446	314,004	338,487	384,960	374,732	371,758
거 창	35,451	38,870	40,652	38,200	44,364	38,971
거창매출규모	11%	12	12%	10%	12%	10%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Ⅲ

연구센터 주요업무 및 운영계획

□ 2020년도 성과목표 및 현 실적

구 분		'20년도 성과 목표	'20년도 실적 (9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15건	25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20건	34건
	원산지 검증 지원	5건	2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300건	529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4건	5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22건
	홍보/마케팅 지원	10건	20건
학술연구용역	성산일출봉 학술조사 외	5건	6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50,000천원	152,634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09,000천원	66,630천원
	학술연구용역	85,000천원	104,147천원
	기타 수익금	-	489천원
	합 계	344,000천원	323,898천원

□ 기업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업무지원

○ 기업지원 및 기술개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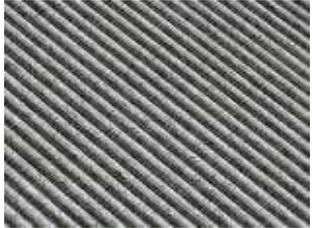
계	특허	실용신안	상표
42건	27건	1건	4건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상용화 실적

구분	개발 제품	생산 업체	매출액 (백만원)	제품 특징	지원내용	제품사진
계			11,517			
1	굴림 보도 판석	영대리석 (가공)	328	폐자재 활용 굴림판	- 제조 및 가공기술 - 제조방법 특허 - 조달청 제품등록	
2	문양 교명주	위천석재 (가공)	50	디자인 접목 교명주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개발	
3	조경석	거우리창돌 등제원터진 (석산)	10,989	가공 조경석	- 제조 및 품질규격 - 품질관리 특허 - 조달청 제품화	
4	성곽석	거우리창돌 (석산)	150	규격 전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 및 시공방법	
5	무광택 판재	한국석재공업동협 조합	-	미끄럼 방지 (판석 전문 업체)	- 제조 및 가공기술 - 제조방법 특허 - 규격 및 시험방법 - 조달청 '혼드' 등록	

※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개발 실적

연번	개발제품	특징	지원내용	제품사진
1	교통안내경계석 (하나석재) (가공기술/특허) (디자인/제품개발)	시인성 확 보 경계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 개발 - 조달우수제품신청	
2	골다듬 판석 (원광석재) (특허 및 제품개발)	미끄럼 방지 판 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 개발 - 골다듬 상표등록 - 조달우수제품신청	
3	빗살무늬판석 (위천석재)	건축 및 토목용 판 석	- 제조 및 가공기술 - 특허/디자인 개발 - 조달우수제품준비	

□ 국제공인시험분석기관/단체표준시험기관 운영

- '13. 4월 국가기술표준원 석재분야 시험기관 지정
- '15. 4월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시험기관 지정
 - ▶ 전국 석재관련 162개 업체 년 2회 이상 시험분석 업무 지원
- '20. 7월 국가기술표준원 골재분야 시험기관 지정
- 거창관내 32개 업체 분석지원 : 분석수수료 50% 할인

구 분	조경석	경계석	판석	기타	합계
전 국	69	57	36	-	162
거창관내	8	14	5	5	32

구 분	2018년	2019년
시험성적서 발급 건수	328건	359건
시험분석수수료 수익금	101,923천원	206,697천원

□ 거창화강석 품질관리 및 수입석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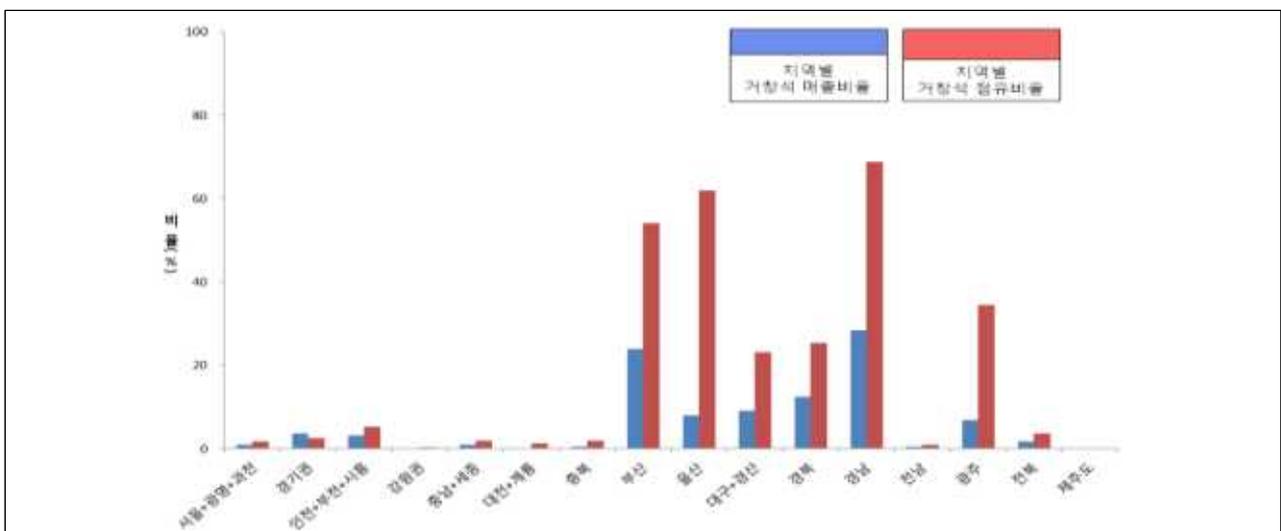
- 석재 원산지 검증 : 부산-울산-경남권 및 대구-경북권
- 울산 “ㄷ” 석재에서 납품된 석재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
 - ▶ 5개 현장에 대하여 70% 이상 수입석 납품(조달품질원 신고)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85% 이상 확대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6	2017	2018	2019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2,067	2,963	3,223	2,958
울산지역 “ㄷ”석재	1,114	19	8	6	0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1,634	2,470	2,221	1,813
타 지역 석재업체	202	414	485	1,005	1,145
합계	1,836	2,067	2,963	3,223	2,958

□ 거창화강석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지역별 거창화강석 판매 비율 및 점유율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
 - ▶ 경계석 관급매출(197억)의 80% 이상이 경상도권에서 이루어 짐
 - ▶ 경상도권에서 거창화강석 점유비율이 평균 50% 정도 형성 중
 - ▶ 경상도권 집중 공략 필요성(홍보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 거창화강석 우수성 홍보 및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

- ▶ 지자체, 건축 및 토목 설계사무소 등 수요자를 대상 직·간접적인 홍보
- ▶ 라돈 등 석재관련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한 품질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거창화강석 홍보 마케팅 실적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지원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유해성 분석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지원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구 분	대 상	구 분	대 상
토양오염공정시험	21개업체 석분	토양용출시험	6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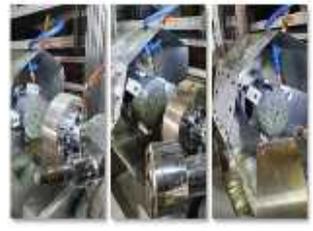
○ 2015년 이후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후 처리내역

년도	실 적	내 용	처리량 (m³)
2016	주상면 희랑생활체육공원 성토재 활용 외 1건	저지대 성토	10,841
2017	위천면 당산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3건	저지대 성토	9,155
2018	남상면 대산리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3건	저지대 성토	11,693
2019	마리면 대동리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1건	저지대 성토	3,458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재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2건출원 준비중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1건출원 준비중)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컬링스톤 상용화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석재표면 처리방법	샘플제작/납품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 신기술 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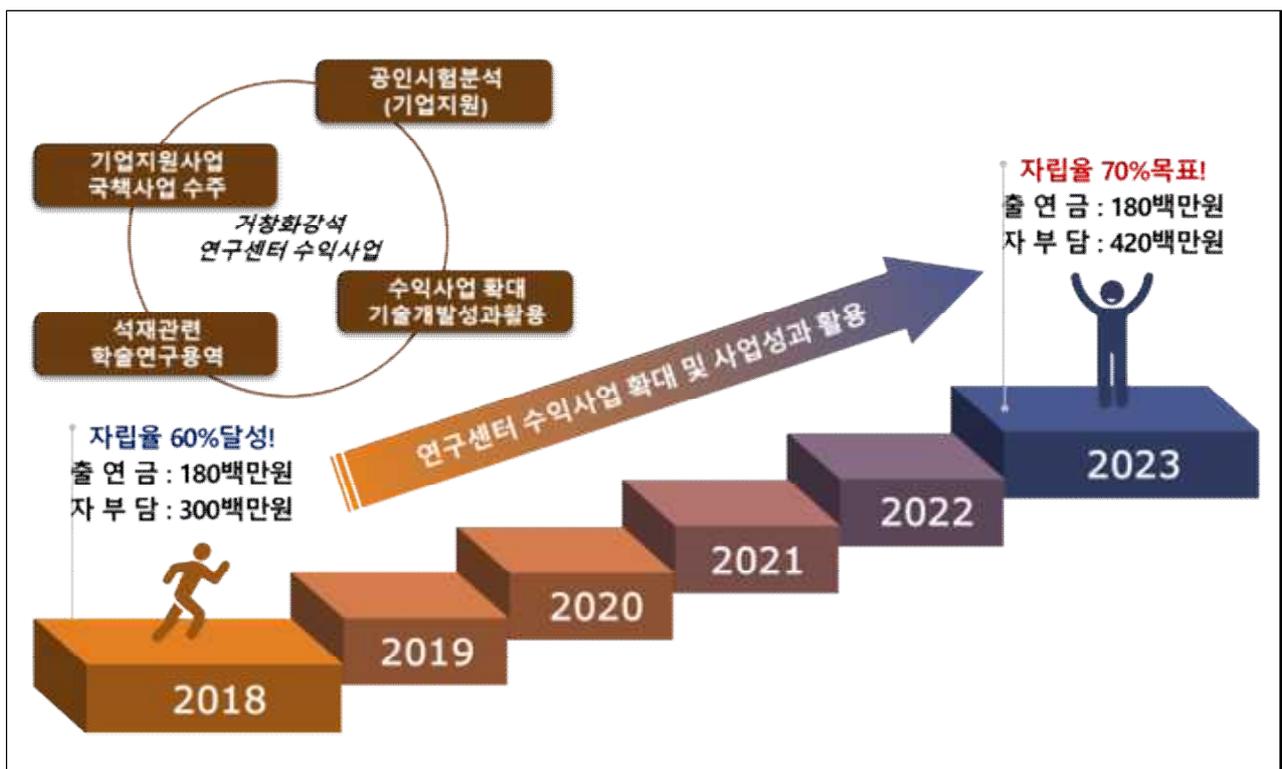
구분	신기술개발	매출액 (백만원)	지원대상	기술개발 수익사업	제품사진
계		272			
1	석재·골재 품질시험 분 석	202	전국/거창관내 (석산 및 가공)	- 공인시험기관운영 - 석재원산지검증 - 가공조경석형상평가 (특허 1건 등록)	
2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 술	60	거창석산협회	- 석산사면안정성평가 - 채석경제성평가 - 드론을 이용한 사면평가/지형변화 (특허 1건 등록)	
3	문화관광 컨텐츠개발	10	거창석재조합	- 석재활용제품개발 - CNC 시제품제작 - 레이저에칭기술개발 - 컬링스톤/미니컬링	
4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	거창석재조합 (매년분석지원)	- 유해성평가분석 - 재활용 제품개발 (특허 1건 등록) - 석분활용방안(거창군) (특허 1건 출원)	
5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 발	-	거창석산협회 거창석재조합 (기업체공동개발)	- 기업애로사항해결 - 컬러석재기술개발 - 석재표면처리제품 - 석재특화제품개발	

※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

IV 연구센터 향후 운영계획

□ 연구센터 운영계획

-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석재관련 기업 지원 및 기업체 연계기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국책사업수주 등을 통한 지원재원 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센터 운영예산은 2011년부터 국비지원에서 군비로 전환되었고, 2013년도에는 군 출연금을 2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2018년에는 1억8천만원으로 축소하였음
- 2015년도부터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를 통해 현재 군비지원 대비 운영예산의 60%를 자체 충당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는 경영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익사업 확대 및 사업발굴을 통하여, 자립율 70%를 목표로 관리 및 운영할 계획임



[연구센터 운영 및 자립화 계획]

관 계 법 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개정이유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1)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나.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업무를 정함(안 제2조)
 - 1) 설치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2) 업무: 약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 및 판매, 홍보 등
- 다. 약초유통센터 위탁 및 이용료(안 제3조)
 - 1) 근거: 법 제51조제2항·제3항
 - 2) 생산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3)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78백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17.~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에 따라 목과류: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로 하고 있음.
-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기존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14.(생략)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목과류: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9조(생략)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2조(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법 제43조의3, 영 제48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을 위탁개발 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위탁기간, 수익귀속, 위탁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6>에 따른다.

제13조~제26조 (생략)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13조(거창약초유통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3. 향노화 제품 개발

제14조(약초센터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571호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제정이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8조)
- 마.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9. 1.~9.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거창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8조(재정지원)에서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여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마련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설정 등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 1)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
 -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안 제15조)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간 등 마련(안 제28조제2항~제4항)

1)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60일 이내 통지

2)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

라. 사용료등에 대한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29조)

마. 소멸시효를 정함(안 제30조)

1)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2) 과오납 사용료등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및 신설(안 별표 7)

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2)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5조·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8. ~ 9.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국민권익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2019. 4. 29.)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0조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의 경우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과오납 사용료등의 채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군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

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2003추13)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